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로 개정('21.10.14.) 되어, 「저수지·댐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의 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가 상이하여 일치 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 일치(안 제22조의2 개정)

현행 저수지·댐법의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와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립규모 일치화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저수지·댐 중”을 “댐 중”으로, “이상인 저수지·댐”을 “이상인 댐”으로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재검토 대상 저수지·댐 등) ① 저수지·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1.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u>저수지·댐</u>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u>저수지·댐</u> 2. (생략) ② (생략)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재검토 대상 저수지·댐 등) ① ----- ----- ----- ----- ----- ----- ----- ----. 1. <u>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u> 2. ----- -- <u>댐 중</u> ----- -- <u>이상인 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4